

규정 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사항:	ACA, ACF, ACH, ACH-RA, GKA-RA, JFA, JFA-RA, JHC, JHC-RA, JHF, JHF-RA
책임 사무실:	교육감(Superintendent of Schools) 학교 협력 및 행정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수석 행정 책임관(Chief Operating Officer)

성희롱

I. 목적

성희롱에 관한 정책 적용을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II. 정의

A.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1972 년과 1991 년에 개정한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와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Act of 1972* 의 성에 따른 불법적 차별을 말합니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상대가 싫어하는 성적인 접근, 성관계 요구 등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말/글/신체적인 행위입니다.

1. 그런 행위를 감수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고용, 교육, 혹은 다른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
2. 성희롱 피해자의 굴복/거부가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자에 관한 인사/학업 상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그런 행위가 부당하게 개인의 업무 혹은 학업적인 성취를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불쾌한 업무/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 B. **성폭력(Sexual violence)**은 개인의 합의 또는 합의를 할 수 없는(예: 개인의 나이, 마약, 약이나 알코올 사용으로 또는 지적 또는 다른 장애로 개인이 합의를 할 능력이 없을 경우 등)개인에 대해 신체적 성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III. 행정절차

성희롱의 어떤 형태는 형사처벌을 야기하거나 아동학대의 범죄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MCPS Regulation JHC-RA,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 와 법집행기관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¹ MCPS의 모든 내부 조사는 외부 형사기관의 조사와 협력해야 하며 외부조사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A. 학생에 대한 적용

1. Montgomery County Board of Education Policy, ACF, *Sexual Harassment* 를 위반하는 행위는 학생이 다른 성 또는 같은 성인 학생이나 교직원과의 성행위에 연관된 경우.
2. 성희롱이나 성에 관한 부적절한 행동에 관련된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학생은 지도, 도움, 그리고/또는 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직원 외에도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직원이 도움을 제공합니다.
3. 고소/신고 접수
 - a) MCPS 학생으로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1) 신고는 구도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2) 신고는 교직원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MCPS Form 230-35,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 을 사용하여 학생의 학교장 또는 대리인에게의 신고를 도울 수 있습니다.

¹ 전체 제목: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and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Police and Montgomery County Sheriff's Office and Rockville City Police Department and Gaithersburg City Police Department and Takoma Park Police Department and Montgomery County State's Attorney's Office: School Resource Officer Program and Other Law Enforcement Responses to School-Based Incident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b) 사건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참여 또는 조사에 협조한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는 없습니다.
- c) 조사는 Board Policy JHF MCPS Regulation JHF-RA,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와 MCPS Form 230-36,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협박 행위 신고 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 d) 적절한 법과 MCPS 의 책임으로 조사와 신고에 대한 비밀 유지는 일관적으로 유지됩니다.
- e) 결정의 서면 사본을 관련 학생과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OSSI)에 제공해야 합니다.
- f) Board Policy ACF, *Sexual Harassment* 를 위반하는 학생은 MCPS Regulations JGA-RB, *Suspension or Expulsion of an MCPS Student*, JGA-RC, *Suspension and Expul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와 *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 에 따라 훈육 조치를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의 심각도에 따라 훈육 조치는 카운슬링, 정학, 퇴학이 포함됩니다.

B. 교직원에의 적용

1. Board Policy ACF 와 *Sexual Harassment* 및 이 규정은 MCPS 교직원이 관련된 모든 성희롱 사건이 적용됩니다. 정책과 규정은 개인과 다른 성 또는 같은 성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성희롱 행위로 정책에 위배하는 MCPS 교직원에 관한 내용을 수립합니다.
2. 성희롱 행위를 알아차리는 것과 바로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3. 성희롱이나 성에 관한 부적절한 행동에 관련된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학생은 지도, 도움, 그리고/또한 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Office of Employee Engagement and Labor Relations(OEELR)에는 이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고소/신고 접수

- a) MCPS 교직원은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즉시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 (1)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2) 신고는 OEELR 의 부교육감(associate superintendent) 또는 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 b) 사건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참여 또는 조사에 협조한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는 없습니다.
- c) 적절한 법과 MCPS 의 책임으로 조사와 불만 명시에의 비밀 유지는 일관적으로 유지됩니다.
- d) 조사는 OEELR 가 진행하게 됩니다.
 - (1) 상황의 사정은 성희롱 사건 가능성의 조사에서 고려 되어 집니다.
 - (2) 주장되는 행동이 성희롱인지를 결정하게 될 때, 주장 되는 사건이 일어난 전후사정을 포함한, 전체 상황 모두 의 사건 기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e) 조사결과와 추천사항은 실현가능한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f) Board Policy ACF, *Sexual Harassment* 와 성희롱에 관련된 MCPS 규정, 규칙을 어긴 교직원은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징계 조치에는 구두, 서면 질책, 전문적 카운슬링, 재배치, 강등 또는 좌천, 정직과 해고가 포함됩니다.

C. 전체 연합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가 이 규정의 학생 적용을 담당하며 OEELR 가 이 규정의 교직원 적용을 다음과 같이 담당합니다.

1. 불만 해결에 관한 정보 배부와 성희롱에 관한 신고와 조사절차

2. 조사와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지침
3. 학교에서 사용할 학생 자료개발에의 도움
4. 학생들에게 성희롱 문제를 이해 및 극복하도록 돕는 활동과 기능을 통합시킨 수정된 K-12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지지
5. 조사와 기록을 주관하고 MCPS 에서의 직원과 학생의 성희롱 불만에 관해 교육감에게 알리기
6. 성희롱 신고의 응답을 위해 절차 적용을 모니터하기
7. 개인정보 관리 요건에 적합하게 불만신고, 신고, 차후관리 행동의 기록관리 관리 및 유지
8. 성희롱 사건 신고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 준비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MCPS 교/직원과 학생 양쪽의 사건 합계 월 질적 및 양적 통계 데이터
 - b) 불만과 해결 절차 평가와 향상
 - c) 트레이닝 통계와 스케줄
 - d) 모든 MCPS 학교와 사무실, 업무 장소
 - e) 성희롱 정책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MCPS 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활동

D. 정보 배부

성희롱에 관한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 규칙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을 구하는 곳에 관한 정보를 모든 MCPS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출판 및 배부합니다. 성희롱에 관한 정보는 OEELR 와 Office of School Administration 가 Offic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Programs 와 함께 개발합니다.

정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배부하게 됩니다:

1. 워크숍 트레이닝과/또는 온라인 모듈 트레이닝,
2. 책자
3. 회보(bulletins)
4. 지원서
5. 안내, 그리고/또는
6. 적절할 경우, 기타 커뮤니케이션 방법

E. 교육/훈련

1. 관리급 직원을 위한 훈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성희롱에 관련된 해당 법과 정책 검토
 - b). 성희롱 관련 사건을 다룰 경우, 직장 관리자로서의 의무, 책임, 잠재적인 법적 책임
 - c). 직원 트레이닝 지침
 - d). 성희롱 신고에 대한 답변 지침
 - e). 직원 불만 조사 지침
 - f). 학생 불만 조사 지침
 - g). 사후 도움제공 지침
2. 학교장은 다음을 포함하여 성희롱에 관한 학생의 인식, 이해, 예방을 돕는 계획의 개발하고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 a). 성희롱 불만에의 답변 지침
 - b). 학교, 직장, 사회환경에서의 부적절한 성적 접근과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 개발의 기회

- c) 성희롱에 관련된 MCPS 학생 자료를 사용

관련자료::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Act of 1972*, as amende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Sexual Harassment Guidelines* (29 C.F.R. §1604.11);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424; Memorandum of Understanding²; MCPS *Student Code of Conduct*;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

규정 변경사: 새 규정 1993년 2월 17일; 갱신 2006년 2월 22일; 갱신 2017년 7월 31일.

² 전체 제목: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and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Police and Montgomery County Sheriff's Office and Rockville City Police Department and Gaithersburg City Police Department and Takoma Park Police Department and Montgomery County State's Attorney's Office: School Resource Officer Program and Other Law Enforcement Responses to School-Based Incidents (Memorandum of Understanding)*